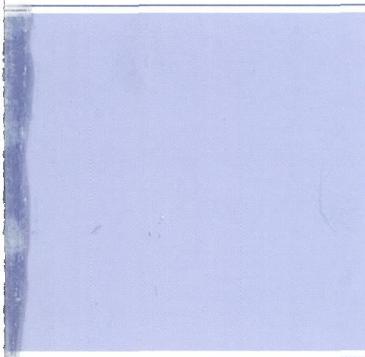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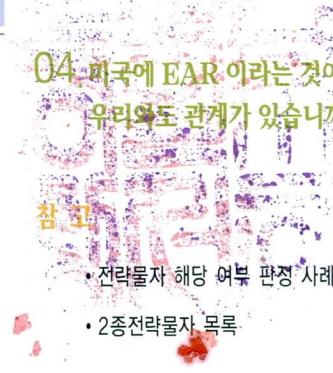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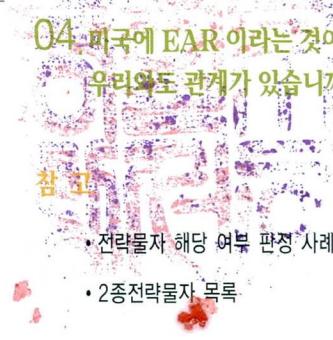


Contents

01. 대북 전략물자 반출통제, 무엇이 문제입니까?	2
02. 구체적으로 통제되는 품목이 따로 있습니까?	6
03. 북한에 전략물자를 반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8
• 전략물자 해당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는 방법!	11
• 전략물자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울 땐!	14
• 전략물을 북한에 반출하려면!	16
• 전략물자 통관절차, 어떻게 다르나!	18
04. 미국에 EAR이라는 것이 있다는데 우리와도 관계가 있습니까? 	19
참고 	20
• 전략물자 해당 여부 판정 사례	21
• 2종전략물자 목록	24

대북 전략물자 반출통제, 무엇이 문제입니까?

[전략물자란, 무기의 개발 등 위험한 목적에 이용될 것을 우려하여 자유로운 수출이 제한되는 물자입니다.]

전략물자란 무기류와 무기류의 제조·개발·이전 등에 이용이 가능한 물자로서, 위험한 국가 또는 단체로 이전될 경우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해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무역거래가 제한되는 물품 및 기술을 말합니다. 따라서 전략물자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물품만이 아니라 물품의 설계, 제조 또는 사용과 관련된 시설, 장비, 기술 및 프로그램도 규제 대상이 됩니다.

[북한에 전략물을 반출하려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전략물을 북한에 반출하려는 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반출·반입승인대상물품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전략물자 범위에 대해서는 「대외무역법」과 「전략물자·기술수출입통합공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 반출·반입승인대상물품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제3조(승인을 요하는 반출·반입) ①남북교역대상물품증 반출·반입함에 있어 승인을 요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대외무역법 제3장 수출입거래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수출입공고, 수출입별도공고, 통합공고, 전략물자 수출 입공고에서 수출·수입에 허가·승인·추천·확인·증명 등의 제한이 있는 물품
 2. ~ 3. (생략)
 4. 반출물품으로서 컴퓨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전략물자 반출승인을 받거나, 반출승인을 받지 않고 전략물자를 반출한 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미국산 제품은 물론, 미국산 부품이나 기술이 10%를 초과하여 포함된 물자를 북한에 반출하려는 경우에도 미국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반출승인과는 별도로, 북한에 반출하려는 물품 등이 미국산 부품이나 기술을 10%를 초과하여 포함하는 경우에는 미국의 「수출관리규정(EAR)」에 따라 미국 상무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국 EAR에 해당되는 전략물자를 미국 상무부의 허가 없이 반출한 경우에 해당 기업은 미국산 제품의 취급 금지, 미국과 일체의 수출입 거래 정지 등의 제재를 당할 수 있습니다.



전략물자 수출통제는 국제사회의 규범으로 자리잡은 만큼,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국제통제수준에 맞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전략물자의 대북 반출시 직접적인 피해자는 해당 기업인만큼 전략물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철저한 이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01. 대북 전략물자 반출통제, 무엇이 문제입니까?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어제와 오늘

전략물자수출통제는 국제환경의 산물이다.

2차 세계대전 후 동서냉전에 의한 코콤(COCOM : Coordinating Committee for Export Control)으로 서구 자유주의 국가들은 전략적 물자와 기술의 공산국가에 대한 수출규제를 실시해왔다. 1991년 구소련의 붕괴로 동서간 전쟁과 무력충돌의 가능성은 멀어졌지만 중동, 스리랑카, 아프가니스탄, 팔레스타인, 인도, 파akistan의 영토, 종교, 민족 갈등은 그치지 않았으며, 2001. 9. 11 미국에 동시다발 테러가 일어났다.

전쟁과 테러에 이용되는 핵무기, 생·화학무기, 미사일 및 운반수단, 재래식무기의 제조·개발·이전 등에 사용되는 모든 관련 물자를 전략물자라 한다. 국제사회는 이들 전략물자가 자유무역과 수출경쟁으로 우려국가 또는 우려집단에 넘어가는 현실을 국제적 안전보장을 위협하는 요소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확산 통제는 국제무역질서로 등장하고 있다.

대량파괴무기의 확산방지를 위한 국제조약은 핵비확산조약(NPT :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생물무기금지협약(BWC :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 화학무기금지협약(CWC : Chemical Weapons Convention)등이 있다. 국제비확산조약은 대량파괴무기뿐만 아니라 개발, 제조, 사용, 저장하는데 전용 가능성이 높은 물품, 세부적으로 재료, 부품, 제조설비, 검사장비, 소프트웨어, 기술을 포함하여 수출통제 대상 리스트를 정하고 있다.

한편 국제사회는 이러한 조약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전략물자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수출통제체제로서 쟁거위원회(ZC : Zangger Committee), 핵공급그룹(NSG : Nuclear Suppliers Group), 호주그룹(AG : Australia Group), 미사일수출통제체제(MTCR :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바세나르체제(WA : Wassenaar Arrangement)등을 창설해 왔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하였고, 국제사회의 통제요구를 국내법에 반영하고 이행하고 있다.

특히 2004. 4. 28 유엔안보리 결의 1540호는 모든 유엔회원국이 대량파괴무기 관련 물자의 연구개발단계에서 최종사용단계까지 공급사슬 전반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조치들을 채택하고 이행할 것을 요구하게 되었고, 이후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통제는 국제규범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북한에 대해서는 2006. 10. 9 핵실험 이후 유엔안보리 결의 1718호가 채택되어 북한에 대한 전략물자의 금수는 물론,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개인과 단체 등과의 금융거래 등을 중지할 것을 결의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통제되는 품목이 따로 있습니까?

[전략물자에는 1종전략물자와 2종전략물자가 있습니다.]

전략물자로서 수출이 통제되는 품목은 「전략물자 · 기술 수출입 통합공고」 별표2 ~ 별표6에 규정되어 있는 1종 전략물자 및 별표7의 2종 전략물자입니다.

[국제 수출통제체제는 각각 통제품목 리스트를 가지고 있으며,
국내법은 이를 1종 전략물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종전략물자는 다자간 전략물자수출통제체제에서 수출통제대상으로 지정한 물품 등으로 「전략물자 · 기술 수출입 통합공고」 별표2 ~ 별표6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1종전략물자의 대북반출은 반드시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전략물자 수출통제품목 찾아보기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 ☞ 서비스 바로가기 ☞ 수출통제품목



제1종 전략물자

WA(바세나르체제)	NSG(핵공급국그룹)	MTCR(미사일수출통제체제)	AG(호주그룹)
<p>〈일반산업용물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소재, 소재가공 · 전자, 컴퓨터 · 센서 및 레이저 · 해양기술 · 추진장치 등 장비 및 기술 <p>〈방산물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기, 탄약 · 군용차량, 전자장비부품 	<p>〈원자력 전용물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원료물질 · 원자로 및 부속장비 · 핵연료가공용 품목등 설계, 건설 기술 <p>〈일반산업용물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용장비 및 소재 · 동위원소분리장비 · 시험, 측정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성로켓 · 주전체 부품 장비 · 계기형방장치 · 항공전자 · 컴퓨터 · 시험장비 · 소프트웨어,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무기전구체 · 제조설비 및 기술 · 1,2,3종 화학물질 · 독성화학물질 및 원료 · 병원균 · 생물학적 병기 (바이러스, 세균 등)

[2종전략물자란 일명 Catch-All 통제라고도 하는데, 이는 특정 품목에 대한 통제가 아니고 일종의 상황에 대한 통제라 할 수 있습니다.]

2종전략물자는 「전략물자 · 기술수출입 통합공고」 별표7 품목(1종전략물자의 기술수준에는 미달되지만 WMD 개발에 간접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제품)으로서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승인을 요하는 물품 등을 말합니다.(동 공고 제20조 제2항)

첫째, 거래자가 반출과 관련하여 입수한 문서 등에 반입자 또는 최종사용자가 2종 전략물자 등을 대량파괴무기 등의 제조, 개발, 사용 및 보관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취지나 개연성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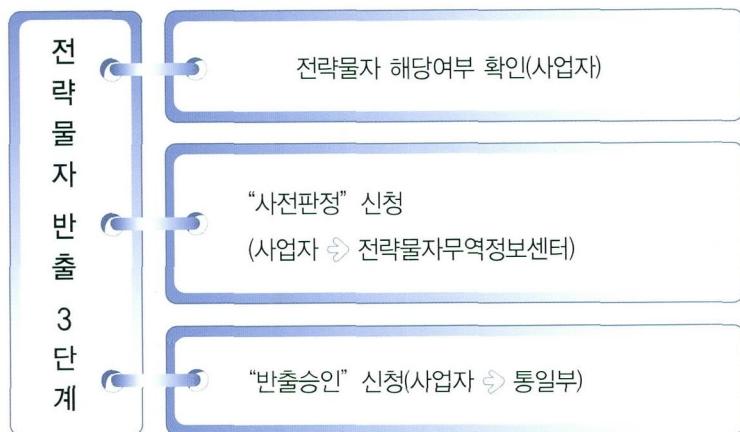
둘째, 기타 거래의 조건 · 상황 등에 비추어보아 반입한 2종전략물을 대량파괴무기 등의 제조, 개발, 사용, 보관 등에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거래자 또는 그 대리인이 인지한 경우

셋째, 승인기관의 장으로부터 전략물자 반출승인을 신청하도록 통보받은 경우

03.

북한에 전략물자를 반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전략물자 반출 3단계





북한에 물자를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우선 그 물자가 ‘전략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결과 전략물자가 아니라면 일반물자 반출절차에 따라, 전략물자인 경우에는 전략물자 반출절차에 따라 반출할 수 있습니다.

반출하려는 품목이 전략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반출자의 의무입니다.

전략물자는 일반인이 쉽게 구별할 수 있는 상품명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규격과 성능을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어 제조자 또는 전문가의 참여 없이는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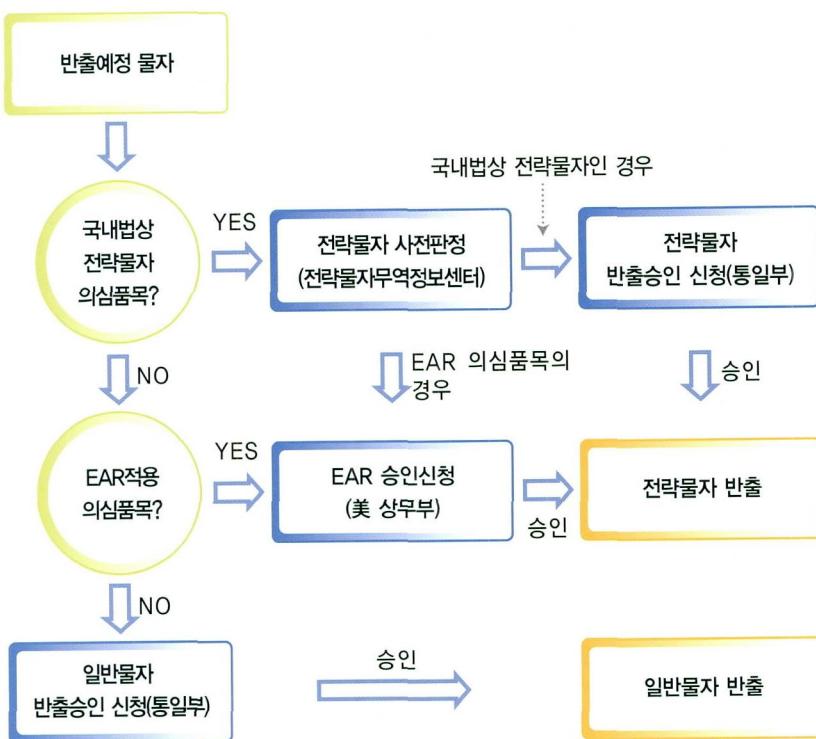
예) 섬유상 또는 필라멘트 재료로 된 것으로 탄성률이 $2.54 \times 10^6 \text{m}$ 를 초과하며 불활성 상황에서 $1,694^\circ\text{C}$ 보다 높은 용융점 등을 가진 것

따라서 정부는 민간 기업인들의 전략물자 해당여부에 대한 판정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무역협회에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략물자 판정과 관련하여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를 통해 사전판정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한국무역협회 부설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는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통일부는 해당 물품의 대북 반출승인을 담당합니다.

03. 북한에 전략물자를 반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북 전략물자 반출 절차





전략물자 해당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는 방법!

[사업자는 먼저, 반출하려는 물자가 전략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북한에 물자를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우선 당해물자가 전략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취급하는 물품 및 기술이 「전략물자 · 기술 수출입통합공고」 별표2 ~ 별표6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평소에 확인하여 두는 것이 좋으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출상담 또는 계약 체결 이전까지는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판단한 결과 및 관련 자료는 향후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북한에 반출하려는 품목이 미국산 부품 또는 기술을 10%이상 포함하는 경우에는 미국의 부품 제작사 등에 문의하여 미국 EAR의 통제품목에 해당되는지 여부도 확인하여야 합니다.

03. 북한에 전략물자를 반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업자는 물품의 설계자, 제조부문 기술자 등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를 참여하도록 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로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1. 대상품목 정의

먼저 판단하고자 하는 품목의 상세정보를 수집합니다. 즉 품명, HSK번호, 모델 형식, 규격, 성능, 용도 및 기술적 특성 등 「전략물자 · 기술 수출입 통합공고」 별표2 ~ 별표6에 열거하고 있는 품목과 규격과 성능 등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합니다.

2. 과거 판정사례 확인

다음으로 판정하고자 하는 물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의 판정사례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공개된 과거 판정사례는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 ⇨ 서비스 바로가기 ⇨ 「판정/허가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사 생산품이 아닌 경우에는 생산자 또는 구입처로부터 판정결과나 판정을 위한 자료 등을 요구하여 확보하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전략물자 해당여부 판단(자가판정)

자가판정이란 반출업체가 반출하고자 하는 물품과 기술이 전략물자 수출통제 품목인지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 반출자 등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전략물자 · 기술 수출입 통합공고」 별표1의 색인목록을 참조하여, 별표2 ~ 별표6의 통제품 목의 규격 및 성능과 비교하여 구체적으로 확인 합니다.

그러나 「전략물자 · 기술수출입 통합공고」를 통한 자가판정은 쉽지 않기 때문에 이의 판정을 손쉽게 하기 위해서 「전략물자관리시스템」에서는 자가판정시스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가판정시스템은 자가판정도구인 parameter sheet를 이용하여 업체 스스로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판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즉 「전략물자관리시스템」에서 「전략물자 – HSK연계표」를 활용하여 HSK10단위 번호로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참고적으로 검색하여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전략물자와 HS코드의 연계가 아직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전략물자 비해당으로 판정이 나왔더라도 별도로 색인목록 및 통제품목의 규격 및 성능을 확인해야 합니다.

03. 북한에 전략물자를 반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략물자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울 땐!

[정부는 사업자의 편의를 위해 전략물자 “사전판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반출하려는 물품이 「전략물자 · 기술 수출입 통합공고」 별표2 ~ 별표6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자가판정을 해보았으나 의문이 있는 사업자는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에서 상담 또는 사전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이나 판정을 위한 기술자문 등 별도의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전략물자 “사전판정” 신청은 「전략물자관리시스템」 (www.yestrade.go.kr)을 통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사전판정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전략물자사전판정신청서(별지 4호 서식), 전략물자의 기술적 특성명세서(별지 5호 서식), 사양서 등 해당 물자의 성능과 용도를 표시하는 서류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 서식 다운로드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 ⇔ 알림/정보마당 ⇔ 전략물자 관련서식 다운로드

사전판정 온라인 신청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 ⇔ 서비스 바로가기 ⇔ 판정/허가시스템 ⇔ 사전판정 ⇔ 사전판정신청

사전판정은 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물품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므로, HS번호는 HSK10단위 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규격 및 성능은 수출통제품목의 규격 및 성능과 대비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03. 북한에 전략물자를 반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략물을 북한에 반출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통일부장관에게 반출승인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통일부장관은 “평화적 목적”에 이용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반출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반출하려는 물자가 「전략물자·기술 수출입 통합공고」 별표2 ~ 별표6에 해당되는 경우(1종전략물자)와, 반출과정에서 입수한 문서 등이나 반출조건 등에 비추어 대량살상무기의 제조 등에 전용될 우려가 있을 경우(2종전략물자)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통일부에 반출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통일부 장관은 제출서류 등을 검토하여 반출하려는 전략물자가 “평화적 목적”에 이용되고, 무기의 제조 등 위험한 목적으로 전용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전략물자 반출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서식 다운로드

남북교류협력시스템(<http://inter-korea.unikorea.go.kr>) ⇨ 이용안내
⇒ 전략물자 반출승인 서식

전략물자 반출 관련 상담 및 승인신청 부서

남북경제협력본부 남북경협3팀(개성공단 반출물자 제외) 02-2100-5953
개성공단사업지원단 투자지원팀(개성공단 반출물자) 02-3783-7443



전략물자 반출승인 신청서류

1. 전략물자반출승인신청서
2. 반출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획약서(offer sheet) 또는 간접교역인 경우
 중개인과 북한거래당사자간의 계약서(교역의 경우)
 협력사업합의서(협력사업의 경우)
 대북지원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지원사업의 경우)
3. 반출대행계약서(위탁자와 반출자가 다른 경우)
4. 특정물품 취급면허증 사본(해당 물품의 경우)
5. 전략물자임을 증빙하는 서류 또는 전략물자사전판정서
6. 전략물자 기술적 특성 명세서
7. 반출물품 등의 성능과 용도, 반출대상 기술의 내용을 표시하는 서류
(매뉴얼, 카탈로그, 사양서 등)
8. 반입자 또는 최종사용자에 대한 소개서 및 사용목적 설명서
9. 기타 필요한 서류

03. 북한에 전략물자를 반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략물자 통관절차, 어떻게 다르나!

**북한으로 반출되는 전략물자는
모두 세관장이 중점 심사하고 물품검사를 실시합니다.**

보통 세관신고는 자동수리가 원칙이나, 대북 반출물품은 모두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입니다.

특히 북한으로 전략물자를 반출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중점 심사하고 물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 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관한고시 제9조① : 북한으로 물품을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그 신고수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북한으로 반출하는 물품중 전략물자수출입통합공고상의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물품 및 이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전략물자수출입통관요령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점심사하고 물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미국에 EAR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와도 관계가 있습니까?

**미국산 부품이나 기술이 10%를 초과하여 포함된 물자를
북한으로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의 반출승인과는 별도로
미국 상무부의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미국의 「수출관리규정(EAR)」은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미국산 부품이나 기술이 일정비율(북한의 경우 10%)을 초과하여 포함된 품목을 재수출하는 경우에 미국에서 직접 수출하는 것과 동일하게 규제하는 국내법의 역외적용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에 미국산 부품이나 기술이 10%를 초과하여 포함된 EAR에 해당되는 전략물을 재수출하려는 사업자는 미국 상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거래금지기업(DPL)으로 공고되어 미국과 일체의 거래가 금지될 뿐만 아니라 세계 많은 국가들과의 거래도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다면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 홈페이지 : <http://www.bis.doc.gov>
EAR 데이터베이스 : http://www.gpo.gov/bis/ear/ear_data.html

>>> 참 고



| 전략물자 판정 사례 |

| 2종 전략물자 목록 |

(전략물자 · 기술 수출입 통합공고 별표7)

참고 | 전략물자 판정 사례

분류	품명 HSK	규격·성능	용도	전략물자 통제번호 통제사양	결과
기계	Check Valve	<ul style="list-style-type: none"> Material : SUS304 + PTFE CON. Type : JIS 10K F.F FLANCE 	반도체 제조공정 중 화학물질 유체 의 역류방지용	AG2.I.6	
	84818010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경 size : 50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ominal Size : 3/8" 이상 • 불소고분자 재질 	해당
기계	수치제어 선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치정밀도 : 4.3μm 최대 가공직경 : 450mm 동시제어축 : 4축 	산업용 소재가공	IL2.B.1, NR1.B.2	
	845811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L2.B.1a : 위치정밀도가 4.5 μm 이하이고, 동시제어 2축 이상 수치제어 선반 • NR1.B.2a : 직경35mm 이상 가공이 가능하고 위치 정밀도 6μm 이하이고 동시 제어 2축 이상의 선반 	해당
기계	3차원 측정기 (CMM)	<ul style="list-style-type: none"> 측정범위(mm) : 300×200×200 측정밀도(μm) : 0.8+2L/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용 소재가공 	IL2.B.6.a	
	9031901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L2.B.6.a : 3차원 최대허용오차(MPEE)가 ISO 10360-2(2001)에 따라 (1.7+L/1000)μm 이하(L은 측정길이(mm)) 	해당
기계	밀링머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선축 2개 형상 회전축 2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타이어 금형 문자 조각기 	NR1.B.2	
	8459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개 이상의 회전 축 사용 가능 또는 	해당
	845951				
	84596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μm 미만의 위치 정밀도 	

참고 | 전략물자 판정 사례

분류	품명 HSK	규격·성능	용도	전략물자 통제번호	결과
				통제사양	
전기 전자	ALD 증착장비 847989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0mm Wafer 증착장비 • impurity-free film • Excellent step coverage • Good uniformity • High k metal 등의 증착에 이용 	<p>웨이퍼 상에 전극과 절연막을 ALD(Atomic Layer Deposition)방식으로 증착하는 장비</p>	IL3.B.1.a.1	해당
전기 전자	Photo Mask(Reticle) 370590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DRAM Device 제품 • 단자(Terminal)수 50개 이하 • 400MHz 이하 주파수 • 섭씨 0~85도 주위 온도에서 동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DR SDRAM을 위해 설계된 마스크 	IL3.B.1.g	해당
전기 전자	증성자 발생기시스템 854319 847989 901580 9027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생기관 : 38~64 cm 직경 및 10~30cm 길이 가진 유리, 세라믹 또는 금속관 • 발생기 어셈블리 : 증성자관, 자석 및 고압변압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폭발 장치에서 핵분열 연쇄 반응 시작 • 원자로 또는 기타 핵심 어셈블리의 상태 분석 • 유정 시추 • 폭발물 탐지 등을 위해 밀봉된 포장의 검사 • 증성자 방사선 사진 물리 연구, 암 치료를 위한 방사선 요법 	NR6.A.5	해당
LCD Module 전기 전자	84716010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solution : 1366(H) * 768(V) • Viewing angle(170) • Brightness : Typical 450cd/m² • Contrast : Typical 1000 : 1 • Response Time : 8m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V set display 기능 	-	비 해 당

참고 전략물자 판정 사례

분류	품명	규격·성능	용도	전략물자 통제번호	결과
	HSK			통제사양	
Photo Resist 생화학	Photo Resist 3707901010	• 파장길이 : 100nm 이하 Photo 공정에 사용	• DRAM device 제조를 위한 사용	IL3.C.2	
알루미늄 합금 소재	760120 761090 761690	• 원심 분리기 회전자	• 293K(20°C)에서 460MPa 의 인장강도, 75mm 이상의 외부 직경을 가진 관형 또는 원통형 고체 형태	IL1.C.2.b NR2.C.1	해당
니켈 분말 소재	750400	• 다이아몬드 공구, 초경 합금, PM Parts, Powder Coatings, Metal Injection Molding Conductive Fillers 등	• 200°C에서 200MPa 이상 혹은 25°C에서 415MPa 이상의 인장강도 • 니켈 분말로서 다음 두 가지 특성을 모두 갖는 것 - 중량기준 니켈함유 순도 99.0% 이상의 것 - ASTM B 330 표준으로 측정된 10µm 미만의 평균 입자 크기	NR2.C.16.a	해당

참고 2종 전략물자 목록 (전략물자·기술 수출입 통합공고 별표7)

HS번호	품명
25류	소금, 흉, 토석류 및 석고·석회와 시멘트
26류	광·슬랙 및 회
27류	광물성 연료, 광물류와 이들의 종류물, 역청물질 및 광물성 왁스
28류	무기화학품 및 귀금속·희토류금속·방사성원소 또는 동위원소의 유기 또는 무기화합물
29류	유기화학품
30류	의료용품
31류	비료
32류	유연 또는 염색엑스, 탄닌과 그들의 유도체, 염료·안료와 기타 착색제, 페인트와 바니쉬, 퍼티와 기타 매스틱 잉크
33류	정유와 레진노이드 및 조제향료와 화장품류 또는 화장용품류
34류	비누·유기계면활성제·조제세제·조제운활유·인조왁스·조제왁스·광택 또는 연마조제품·양초와 이와 유사한 물품·조형용 페이스트·치과용왁스와 플라스터를 기제로 한 치과용 조제품
35류	단백질계 물질, 변성전분, 글루 및 효소
36류	화약류·화공품·성냥·발화성 합금 및 특정 가연성 조제품
37류	사진용 또는 영화용의 재료
38류	각종 화학공업 생상품
39류	플라스틱과 그 제품
40류	고무와 그 제품
54류	인조필라멘트
55류	인조스테이플섬유
56류	워딩·펠트 및 부직포·특수사·끈·코디지·로프 및 케이블과 이들의 제품
57류	양탄자류와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바닥깔개
58류	특수직물, 터후트한 섬유직물, 레이스, 태피스트리, 트리밍과 자수포
59류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중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공업용의 방직용 섬유제품
63류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의 기타 물품, 세트, 사용하던 의류·사용하던 방직용 섬유제품 및 넝마
68류	석·플라스터·시멘트·석면·운모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69류	도자제품
70류	유리와 유리제품